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환 경 개 선 비 용 부 담 법 시 행 령
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권한을 징수권자(시·도지사)에게 위임하여 징수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, 결손처분시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,

개선부담금 계산식에 적용하는 지역계수 중 가중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부과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개선부담금 결손처분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
(안 제28조제1항제6호 신설)

나. 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등의 사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(안 제29조제3호 신설)

다. 개선부담금 계산식에 적용하는 지역계수를 가중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인용법률을 명확히 규정(안 별표7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예정
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신설한다.

6.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

제29조제3호를 다음과 신설한다.

3.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무
별표7 제2호 비고 6 중 “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”을 “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중 수도권지역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지역)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권한의 위임) ①(생략)	제28조(권한의 위임) ①(현행과 같음)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6.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 금의 결손처분</u>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(생략)	제2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(현 행과 같음)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3.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무</u>
[별표 7]	[별표 7]
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(제15조 관련)	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(제15조 관련)
1. 오염유발계수 (생략)	1. 오염유발계수 (현행과 같음)
2. 지역계수 (생략)	2. 지역계수 (현행과 같음)
비고	비고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	6.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 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중 수 도권지역(서울특별시, 인천광

은 "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"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. 3. 차령계수 (생 략)	<u>역시, 경기도 지역)의</u> ----- ----- -----. 3. 차령계수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녹색전환정책과	
연 락 처	044-201-6688